

부조리 신고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안심번호사제) 도입 등

2.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나. 징계 외의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6층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실
- 담당자(이메일) : 최인수 대리(chldlstn@khug.or.kr)
- 전화번호 : 051-955-5643
- 팩스번호 : 051-955-5406

4. 예고기간 단축사유

조속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 강화 필요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부조리 행위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 행위(이하 “부조리행위”라 한다)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 - - -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 명확화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가. 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사규·지침·예규(이하 “사규 등”이라 한다)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나, 다. (생략) 2. (생략)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외부인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4, 5. (생략)	제2조(정의) - - - - 1. (현행과 같음) 가. 임직원이 - - - - - 법령 및 사규·지침·예규(이하 “사규 등”이라 한다) - - - - - 나,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 - - - - - - - 자를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4, 5. (현행과 같음)	용어 정리
< 신 설 >	제6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6조에 불구하고 내부 신고자(공사 임직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책임관이 위촉하는 안심번호사를 통하여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2항 등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안심번호사의	비 실 명 대리신고 관련 조항 신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u>인적사항으로 같음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대리신고를 수행하는 안심변호사는 신고취지 등을 기재한 문서(별지서식 제1호)와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봉인하여 증거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관련한 봉인 자료는 신고자 본인의 동의(별지서식 제8호)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u> <u>④ 제1항의 안심변호사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u>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u>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 - - - - - - - - - <u>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u> - - - - - - - - - - - - - - -	용어 정리
② <u>책임관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제1항을 위반하여</u>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임직원에게 징계(별표 3)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사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② <u>책임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용어 정리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u>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u>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u>사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및 사규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하는</u>	징계 외의 불리한 처분에 대한 감경,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u>< 신 설 ></u> ②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신고자 보호) ① (생략) 1. ~ 4. (생략) <u>< 신 설 ></u> 제16조의3(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생략) 1. 부조리행위등을 행한자에 대하여 <u>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u>,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3. (생략) 제22조(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및 허가) ① 신고자, 신고자의 대리인인 변호사·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은 <u>값사실</u>에 신고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u>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5조(신고자 보호)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u>5. 규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u> 제16조의3(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현행과 같음) 1. - - - - - <u>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 (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u> - - - - - - - - - - 2, 3. (현행과 같음) 제22조(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및 허가) ① - - - - - - - - - - - - - - - <u>값사</u> <u>지원부서에</u> -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2022. 0.00.>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면제 조항 구체화 신 고 자 보호 강화 포 상 금 지급 사유 법령 반영 용어정리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2] (제16조의2 관련) 보상금 등 지급기준	시행한다. [별표 2] (제16조의2 관련) 보상금 등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 대상을 상위 법령과 일치 등
[별지서식 제1호] (제6조 관련) <u>신고서</u>	[별지서식 제1호] (제6조, 제6조의2 관련) (비실명 대리) 신고서	신고서에 비 실 명 대리신고 내용 반영
[별지서식 제4호] (제6조, 제7조 관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신 설 >	[별지서식 제4호] (제6조, 제7조 관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별지서식 제8호] (제6조의2 관련) <u>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u>	국민권익 위 원 회 표 준 안 반영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 양식 신설

제정 2006.11.23

개정 2006.12.8(개폐정리)

개정 2011. 6.9(개폐정리)

개정 2012.10.25

개정 2013. 4.30(개폐정리)

개정 2013.10.25

개정 2014. 7.31

개정 2015.6.30(개폐정리)

전부개정 2015.10.23.

개정 2016.11. 2

개정 2020. 3.11.

개정 2020. 9. 9(개폐정리)

개정 2021. 3.25.(개폐정리)

개정 2021. 7.23.

개정 2022.00.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이하 “부조리행위”라 한다)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조리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및 사규·지침·예규(이하 “사규등”이라 한다)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사의 예산사용, 공사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사규등에 위반하여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2. “임직원 행동강령”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말한다.
- 3. “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삭제 2021. 7.23.>
 - 나. 공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및 수사기관 등에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자
 - 다.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조사 또는 수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 5.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를 의미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나.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 마.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 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업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그 명단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3조 (사장의 책무) ①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에게 부조리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조리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부조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부조리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조리행위 신고자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부조리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사규등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조리행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하 “부조리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부조리행위등의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조리행위등을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부조리행위등의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은 상근감사위원으로 한다.

② 책임관은 부조리행위등의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책임관은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종결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감사 지원부서의 장에게 지시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의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조리행위 등의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공사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조리행위등의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별지서식 제1호)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행위등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신고접수관리대장(별지서식 제2호)에 기록하고, 접수증(별지서식 제3호),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별지서식 제4호) 및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별지서식 제5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별지서식 제6호)를 작성하게 한다.

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내부 신고자(공사 임직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책임관이 위촉하는 안심변호사를 통하여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2항 등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안심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같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신고를 수행하는 안심변호사는 신고취지 등을 기재한 문서(별지서식 제1호)와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봉인하여 증거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관련한 봉인 자료는 신고자 본인의 동의(별지서식 제8호)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안심변호사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감사·조사·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감사·조사·수사한 결과, 당해 부조리행위등의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사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부조리행위등을 한 경우 책임관은 그 사실을 발견한 때 수사기관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직무관련 범죄고발세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감사·조사·수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조리 행위등에 대한 신고내용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감사·조사·수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별지서식 제4호)와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별지서식 제5호)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조사·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조리행위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⑩ 제9항에 따른 감사·조사·수사 결과 통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조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의 업무처리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조리행위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공사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감사·조사·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부조리행위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조리행위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조리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임직원에게 징계(별표 3)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사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감사·조사·수사 및 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별지서식 제6호)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불

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책임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별표 3)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사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20. 3.11.>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사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및 사규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신고자 보호) ① 책임관은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규정 제10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2. 규정 제11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3. 규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4.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해당 불이익 조치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에 의한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혹은 동법 제62조의5에 의한 일시정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함이 필요한 경우
5. 규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② 책임관은 제1항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별표 3) 등 필요한 조치를 사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조리행위등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포상 및 보상 등) ① 공사는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규정에 따른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별표 2에 따른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추천 및 포상금·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추천·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보상금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근감사위원이 포상금·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의3(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사에서 처리한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추천서(별지서식 제7호)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조리행위등을 행한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사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6조의4(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사는 신고자,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17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 ① 부조리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② 외부위탁익명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부조리행위등과 관련한 신고의 경우 규정 제6조제6항, 제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 내지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외부위탁익명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제4장 신고사무처리 및 기록의 관리

제20조(신고사무처리 원칙)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를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의 접수, 조사, 보고, 징계요구 등 신고사무처리를 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규정에 의한 기안용지의 사용 및 문서 수발신 등을 생략하고 간이결재 형태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기록의 보존 등) ①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련된 각종 기록의 보관, 보존관리는 책임관이 담당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련된 각종 기록을 신고자의 신분누설 등의 위험이 없도록 주의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기록의 보관, 보존관리 및 폐기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서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및 허가) ① 신고자, 신고자의 대리인인 변호사·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은 감사 지원 부서에 신고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열람 및 등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신고자 또는 신고관계인의 신분노출 및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책임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인이 진상조사나 감사를 위한 목적으로 신고기록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23조(열람·등사의 방법) ① 기록의 열람·등사는 책임관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보존사무 담당직원을 열람에 참여시켜 기록훼손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경우에 따라 감사를 위한 목적으로 외부 감사인이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책임관이 기록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규정의 개정으로 「내외부 신고사무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침」은 폐지한다.

부칙<2016.11. 2>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11.>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9.>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3. 25.>

이 규정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7. 23.>

이 규정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0.00.>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